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의 명칭 :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3.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한다.

* 개인실손의료보험 :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4.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다.

-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유지 중인 경우
- (2) (1)의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현역병으로 입영한 병사(복무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현역병】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을 의미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가. 상기 ‘4.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다.

나. 계약 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다.

* 주계약의 소멸: ①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는 ①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다.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재개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므로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다.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라.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한다.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마.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상기 '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된다.

6. 기타 사항

- 가. 회사는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한다.
- 나.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중지·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구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한다),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마.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 바. '4.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5.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른다.
- 사.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아.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Chubb. Insured.SM